



학부 외국인특별전형 장학제도

적용대상: 2023학년도 후기 신·편입생 및 2023학년도 2학기 등록 대상자부터 적용

1 입학우수장학금

외국인특별전형으로 입학한 학생(신·편입생)에게 공인 언어능력 수준에 따른 등록금 감면 혜택을 입학우수장학금으로 지급

| 구분 | 등록금 감면율 | 적용 기간 | 비고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TOPIK 4급 이상 또는 IELTS 6.5 이상 | 100% | 최초 1학기 | * 입학 시 공인 언어능력에 한함 |
| IELTS 6.0 | 50% | | |

2 성적우수장학금

외국인특별전형으로 입학한 학생(신·편입생)에게 입학 후 두 번째 학기부터 정규학기 이내 학업성적에 따라 성적우수장학금 지급

(직전학기 성적 기준)

| 장학조건 | 장학혜택 | 비고 |
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|
| 상위 2% 이내 | 등록금 100% 감면 | * 외국인 유학생 간의 상대평가 * 직전학기에 12학점 이상 (마지막 학년은 10학점 이상) 취득 |
| 상위 2% 초과 ~ 5% 이내 | 등록금 90% 감면 | |
| 상위 5% 초과 ~ 10% 이내 | 등록금 80% 감면 | |
| 상위 10% 초과 ~ 12% 이내 | 등록금 60% 감면 | |
| 상위 12% 초과 ~ 20% 이내 | 등록금 50% 감면 | |
| 상위 20% 초과 ~ 25% 이내 | 등록금 40% 감면 | |
| 상위 25% 초과 ~ 30% 이내 | 등록금 30% 감면 | |
| 상위 30% 초과 ~ 50% 이내 | 등록금 20% 감면 | |

3 정착장학금

외국인특별전형으로 입학한 학생 중 해당 학기(1학기: 3월~8월, 2학기: 9월~익년 2월) TOPIK 전 회차 응시한 자에 한하여 성적증명서 제출 시 50만원/학기 정착장학금 지급 단, 정규 마지막 학기자부터 제외
(비등록금성, 등록금 초과 가능)

4 외국인유학생자치기구장학금

외국인특별전형으로 입학한 학생 중 외국인유학생자치기구 구성원으로 선출된 학생에게 자치기구 활동에 따른 장학금 지급(비등록금성, 등록금 초과 가능)

【외국인유학생자치기구장학금 지급 제도】

1. 회 장: 50만원/학기
2. 부회장: 40만원/학기
3. 집행부: 30만원/학기

5 외국인유학생봉사장학금

교내·외에서 개최되는 행사, 통·번역 및 외국인 유학생 관련 지원업무에 참여하여 활동한 유학생에게 해당 활동에 따른 장학금 지급
(근로장학생 교내근로 지원금액 기준, 비등록금성, 등록금 초과 가능)

6 언어능력시험 취득 및 향상 장학금

외국인특별전형으로 입학한 학생(신·편입생)을 대상으로 공인 언어능력시험 급수 취득 및 실력 향상을 위해 TOPIK 상위 급수(4급 이상) 또는 IELTS 상위 점수(6.0 이상) 취득 시 30만원 지급

(비등록금성, 등록금 초과 가능)

- 상위 급수 및 점수 취득 기준

| 구분 | 내용 |
|-------|--|
| TOPIK | 3급 이하 → 4급 이상, 4급 이하 → 5급 이상, 5급 이하 → 6급 |
| IELTS | 5.5 이하 → 6.0 이상, 6.0 이하 → 6.5 이상, 6.5 이하 → 7.0 이상, 7.0 이하 → 7.5 이상, 7.5 이하 → 8.0 이상, 8.0 이하 → 8.5 이상, 8.5 이하 → 9.0 |

7 협정기관 특별장학금

우리 대학과 협정을 체결한 자매대학 및 협력기관을 통하여 입학 또는 본교 한국어연수 과정을 1년 이상 수강하고 학위과정으로 진학한 외국인 유학생에게 100만원 장학금 지급 (첫 학기에 한함, 비등록금성, 등록금 초과 가능)